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1011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10118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1175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무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 종결 2022. 3. 10.

판결 선고 2022. 4. 28.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1175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9,910분의 7,93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3. 8. 접수 제26062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4441호 제1심 판결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는 V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피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등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8. 피고 앞으로 2019.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위 등기가 말소되거나 V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는 설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4441호 사건에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W 강제경매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그 배당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U이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W로 안양시 동안구 X 임야 20,253m² 중 E의 40,506분의 16,51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법원이 2022. 2. 24. 매수통지불응을 이유로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규

판사신미진

판사박미영

별지